

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제정 2007. 10. 1

1차 개정 2009. 8. 27

2차 개정 2010. 8. 23

3차 개정 2015. 6. 11

4차 개정 2020. 6. 22

I. 목적

이 실천사항은 태영건설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II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1. 기본원칙

이 실천사항은 태영건설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·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태영건설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(1) 내부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(원가관리팀장)은 내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심의위원은 각 하도급업무 담당자(건축, 토목, 전기, 설비), 공사팀장, 견적팀장, 동반성장팀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(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(마지막주 월요일)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

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척할 수 있다. 안전이 없는 경우에는 '안전없음' 으로 기록 관리한다.

(2) 내부 심의위원회는 태영건설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50억원 이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건과 예정금액이 실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<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>
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-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-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-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-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-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
(3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(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
(5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(6) 심의 안전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
(7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